

건의서

건의자 이동규

건의일자 2021. 1. 30.

취지

학생회 회칙의 제정을 건의함.

이유

- 우리 학생회는 독자적인 회칙 없이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과대학 학생회 규정과 관습에 의존하고 있음.
- 회칙을 제정한다면 학생회 스스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단체의 독립성과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회칙을 근거로 다른 규약을 제정하여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를테면 회계, 재정,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한편, 금융기관과 학생회를 당사자로 하는 예금계약(학생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을 체결할 때 은행에서 단체의 정관, 즉 회칙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회칙을 제정한다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임.

실현방안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기초하고 1학기 또는 2학기 개강총회에서 의결함.

※ 회장단과 학년 대표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칙을 제정하는 사례도 있음(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등). 그러나 우리 학생회는 총회 외에 다른 의결기관을 두지 않고, 3월과 9월에 개강총회를 소집하는 등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관습이 있으므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붙임]

1. 회칙 공포문 및 제정안(시안) 1부

감사합니다. (끝)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회장 귀하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회칙 제정안(시안)

건의자	이동규 (정치외교학과)
제출연월일	2021. 1. 30.



공포문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월 -일 제정된 회칙을 공포한다.

이 회칙은 회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게시판에 공고된다.

2021년 -월 -일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회장 (직인)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회칙

분류 회칙

2021년 -월 -일 제 정

전문

우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독재에 항거한 10·16 부마항쟁의 정신과 자유·진리·봉사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학생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며, 학생자치를 실현하고 학생의 복리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하 회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회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복리와 권익 신장
2. 회원의 화합과 친목 도모
3. 학원의 자율화와 민주화
4. 진리의 전당 수호
5. 학생자치의 발전
6. 대학문화의 창달

제3조(소재지) 이회의 사무소는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사회관에 둔다. 다만,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칙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기 전까지 회장이 공고하는 곳에 둔다.

제4조(공고) ① 이회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 주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
2.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
3. 전체 회원에게 문자, 우편 그 밖의 적당한 수단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공고하고 7일이 지나면 모든 회원에게 공고한 사항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방학 기타 휴교하는 동안을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이회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재학 중인 회원으로 한다.

③ 준회원은 휴학 중인 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이 회의 활동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이 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알 권리와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임원에게 이 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회원은 이 회의 활동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⑥ 회원의 권리는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의 설립목적에 좇아 성실히 생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회칙과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총회의 재적인원과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학기에 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회 의결권과 소집요구권

2. 회장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총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에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3월과 9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의 하나가 있으면 의장이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원 10인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7일 전까지 안건과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거나 보고할 사항만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소집요구가 있고 7일 이내에 의장(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총회의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이 직접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규약의 제정·개정·폐지

3. 예산과 결산

4. 재산의 처분

5. 회장, 부회장, 감사, 집행위원 기타 임원의 해임

6. 회원이 소집요구와 함께 제시한 안건

7.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감사가 부의한 안건
8. 회칙 또는 규약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 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일반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인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는 회칙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인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4조(특별정족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또는 부회장의 해임

제15조(의결권) ①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2항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장) ① 총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부회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② 누구든 이 회와 자신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의결 전까지 의장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이 경우 총회는 출석한 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맡을 사람이 없으면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된 때에는 그 해임안에 관한 총회의 소집부터 폐회까지 감사(감사가 2인이면 연장자를 의장으로, 연소자를 부의장으로 한다)를 의장으로 한다.

제17조(총투표) ① 의장은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하고 해당 투표의 결과를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4항, 제13조 제2항, 제14조는 제1항의 투표 절차에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총투표”로, “소집”은 “시행”으로, “출석”은 “투표”로, “출석인원”은 “투표한 인원”으로 본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 이 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집행위원 7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집행위원과 집행부원을 임면(任免)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집행위원은 회장단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자 맡은 고유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여 부정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전체 회

원에게 보고한다.

제20조(회장단의 권한) ① 회장단은 이 회의 설립목적을 좇아 대표권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② 회장단은 특정한 사무의 처리를 집행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회칙이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총회가 금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집행위원의 권한) ① 집행위원은 회장단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며, 그 고유한 사무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② 집행위원은 회장에게 집행부원의 선발·임명·해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예고 없이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회와 회장 또는 이 회와 부회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 회를 대표한다.

제23조(선임) ① 회장은 회원의 직접·보통·평등·자유·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후보가 단독이면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전체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최다 득표로 당선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입후보하여 동시에 선거한다. 회장후보는 후보등록 전까지 혹은 후보등록을 하면서 함께 입후보할 부회장후보를 지명하여야 한다.

③ 집행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원 중에서 공개로 모집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1. 회장·부회장 또는 집행위원의 직에 있거나 집행부원으로 일하는 사람
2. 회장·부회장 또는 집행위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거나 배우자인 사람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의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횡령죄·배임죄 또는 배임수증재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

제24조(보선) ①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곧바로 보선한다.

② 회장단의 경우에는 회장과 부회장이 전부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퇴직하고 그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80일을 넘는 경우에만 보선한다. 그러나 180일을 넘지 않으면 임원의 임기종료일 60일 전날부터 15일 전날 사이에 차기 회장단을 선임하고, 그전까지는 권한대행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처음 맞이하는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장단의 임기는 제 24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6조(권한대행) ① 회장단은 후임자를 선거함 없이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후임자를 선거하는 때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졸업·수료 그 밖의 사유로 회원이 아니게 되거나 그 직에서 사임하거나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과 부회장이 전부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퇴직하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70일 미만이고 차기 회장단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가 준비 중인 때에는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 1인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총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7조(당연퇴직) 임원에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임원은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졸업, 수료, 학적변경 기타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무기정학 또는 출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구속된 경우
4. 행방불명되어 회장 또는 감사가 임원의 부재를 공고하고 그날로부터 3주 이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

제5장 집행위원회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에는 사무의 집행을 관장하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도울 집행부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29조(업무) 집행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2. 사업계획과 기본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지침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심의
4. 그 밖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조직)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② 집행위원회에는 고유한 사무의 구분에 따라 사무조직을 둘 수 있다. 사무조직은 부(部)로 편성한다.
- ③ 부장은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보하고, 부원은 회장이 집행부원으로 보한다.

제6장 재정

제31조(재원) ① 이 회의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참가비
3. 기부금
4. 교비지원
5. 기타 수입금

② 교비지원을 제외한 지원금, 후원금, 축하금, 찬조금 그 밖의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이 회나 회원을 위하여 취득한 금전은 기부금으로 본다.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3조(수입·지출) ① 이 회의 수입과 지출은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이 회의 자금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설립목적에 알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자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이 회의 재산은 회장단과 그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집행위원이 관리한다. 그러나 총회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행위를 하면서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② 이 회의 재산의 처분은 회칙이나 규약으로 정하는 외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회칙의 개정) ①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1항의 제안이 있으면 의장은 총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7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한다.

③ 회칙의 개정에 필요한 찬성을 얻으면 회칙의 개정은 확정되며, 회장은 곧바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칙의 개정이 확정되고도 7일 넘게 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위원이나 감사가 이를 공포할 수 있다.

제36조(규약) ① 총회는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약을 제정한다.

② 회장은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이 회의 기본적인 사업, 사무처리의 절차,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을 제정한다.

③ 회칙에 위반되는 규약과 지침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으며, 규약에 위반되는 지침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37조(회칙 등의 공포) ① 제4조 제1항 제2호는 회칙과 규약·지침을 공포하는 방법에 준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동조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한다.

② 회칙과 규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공포문 하단에는 이를 공포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직인을 찍는다.

③ 지침의 공포문 전문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과 공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공포문 하단에는 회장이 서명하거나 직인을 찍는다.

④ 시행일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으면 회칙과 규약·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조(특별위원회) ① 회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검토하거나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무에 관한 사안
2. 대학공동체 또는 학생자치에서 관심이 지속하는 사안
3. 그 밖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하여 다룰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②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활동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를 넘지 못한다.

제39조(다른 단체와의 관계) ① 이회는 단체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그 밖에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학생단체를 지원한다.

② 회칙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총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의 작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는 다음 단체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2.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③ 회장단 선거에는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칙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거나 총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21. .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을 시행할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칙을 시행할 당시의 집행위원회 구성과 조직은 이 회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